

◇주요내용

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

- 1) 국세청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조세범칙사건의 심의기구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2)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의 선정, 조세범칙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지방국세청에 두도록 하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나.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등(안 제7조)

- 1)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에 관한 기준이 미비되어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세범칙조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 2)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하거나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3) 조세포탈 등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의 정비(현행 제16조 삭제)

- 1) 「조세범 처벌절차법」과 「국세기본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탈세제보 포상금제도는 그 성격이 유사함에도 지급금액, 지급시기 등이 달라 법적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음.
- 2) 종전의 포상금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등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
- 3) 탈세제보 포상금을 둘러싼 법적 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항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장 박재완

●법률 제1113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적용하여 산출한”을 “곱하여 계산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에서 규정하는”을 “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제2호 중 “향상 및 해외시장 진출”을 “향상, 해외시장 진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비용”을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이루기”를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3)의 계산식 중 “연구·인력개발비”를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제10조의2제5항 중 “출연금”을 “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를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을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으로, “승인을 받아 설립한”을 “등록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각각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을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을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을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벤처기업”을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한다.

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을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부터”를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부터”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제2호의2”를 각각 “제2호의2·제2호의3”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 중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을 각각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6호 중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을 각각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한다.

2의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14조제4항제1호 및 제1호의2 중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을 각각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중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을 각각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한국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2호의2”를 “제2호의2·제2호의3”으로 한다.

1의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 소득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20)”으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4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2011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발행하는”을 “국외에서 발행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본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추가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중소기업이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나.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수 × 1천500만원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 × 1천만원

라. 해당 과세연도에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제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및 제3항(중전의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같은 법 제6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中間豫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76조의18에 따른 연결중간예납(같은 법 제76조의18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간예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중간예납기간의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는 “중간예납기간”으로 본다.

③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중간예납기간의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그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뺀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는 “중간예납기간”으로 본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신고하는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중간예납기간의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은 빠지 아니한다.

제26조제6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144조제3항”으로, “공제(제144조에 따라 이월공제받은 경우

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은”을 “그 공제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이”를 “중간예납기간의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이”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을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을”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144조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또는 제144조제3항”으로,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를 “상시근로자 및 청년근로자의 범위와 상시근로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및 청년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비과세 신청을”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로,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비과세”를 각각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부터 계산한다.
-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11년 12월 31일”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5제1항 전단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창업자금을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제30조의6제1항 본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로 한다.

제3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한다.

1.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법인전환 당시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유상감자 하는 경우

제39조제1항제1호 중 “특수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 “특수관계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주주등과”를 “주주등의”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제40조제6항 단서 중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 8항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제44조제5항 중 “제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제출”로 한다.

제45조제3항 단서 중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 4항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 “특수관계자가”를 “특수관계인이”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제2호 중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로 한다.

제46조의3제1항제2호 중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주주의 특수관계인이”로 한다.

제46조의4제1항 전단 중 “2009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특수관계자”를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제4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특수관계자”를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중 “이전하기”를 “이전(수도권 밖에 있는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기”로,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이 조에서 “혁신도시”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종전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1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은 “혁신도시”로 보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으로 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은 “중전부동산”으로 본다.
-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 양도차익 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이하 이 조에서 “성장관리권역”이라 한다)에 본사가 소재하는 이전공공기관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공공기관은 과세연도별로 제1호의 금액에 제2호 또는 제3호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2.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移轉) 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근무인원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3.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 법인 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란 혁신도시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은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빼고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법인 전체 근무인원이란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말한다.
-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법인세 감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 중 이전본사 근무 임원 수가 수도권의 본사 근무 임원과 이전본사 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4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 ⑦ 제4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이전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수도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4. 임원 중 이전본사 근무 임원 수가 수도권의 본사 근무 임원과 이전본사 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 ⑧ 제4항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제7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⑨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기간 계산의 방법, 급여의 범위, 세액감면신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제1항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11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 중 “받는”을 각각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⑩ 제1항·제2항·제5항 또는 제6항을 적용받으려는 지방이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제68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외의”를 각각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직접 경작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으로 한다.

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직접 축산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로 한다.

제70조제1항 본문 중 “직접 경작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접 경작하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으로,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3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발전기금

마.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제74조제1항제7호나목 중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을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으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4조제1항제7호에 라목과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마.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포물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이하 “포물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8.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1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월 납입액이 10만원”을 “연 납입액이 120만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월 10만원”을 “연 120만원”으로 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중 “조합 등”을 “조합 등에”로 한다.

제91조의4의 제목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주식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이하 “투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사회기반시설투자회사 또는 사회기반시설투자신탁(이하 “투자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으로, “투자회사로부터”를 “투자자집합투자기구로부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보유주식”을 각각 “주식등”으로, “투자회사별”을 각각 “투자자집합투자기구별”로, “보유주식부분”을 “주식등분”으로 한다.

제91조의4제2항 중 “투자회사”를 각각 “투자자집합투자기구”로, “주권”을 “주식등”으로, “주식보유자별·증권회사별”을 “주식등보유자별·투자매매업자별·투자중개업자별”로, “주식보유자”를 “주식등보유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투자회사”를 각각 “투자자집합투자기구”로, “주권”을 “주식등”으로, “주식보유자”를 “주식등보유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투자회사”를 “투자자집합투자기구”로, “투자회사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를 “투자자집합투자기구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로 한다.

제91조의6제1항 전단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그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별로 3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한다.

제9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96조를 삭제한다.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0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을 것
제100조의3제1항제2호 중 “1천700만원 미만일 것”을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가목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 및 각 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을 한 채”를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6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로서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총소득기준금액으로 한다.

가. 총소득기준금액

부양자녀 수	총소득기준금액
0명	1천300만원
1명	1천700만원
2명	2천100만원
3명 이상	2천500만원

나. 가목의 구분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개월 수/12) × 100
분의 130

제100조의4의 제목 “(부양자녀의 생계요건과 판정시기)”를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00조의3제1항제1호”를 “제1항제4호”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를 “부양자녀”로 한다.

① 부양자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일 것.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손자·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2. 18세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4.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일 것.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1.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에 60분의 7을 곱한 금액
나	6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70만원
다	900만원 이상 1천300만원 미만	1천300만원에서 총급여액 등을 뺀 금액에 40분의 7을 곱한 금액

2. 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에 40분의 7을 곱한 금액
나	8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	140만원
다	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1천700만원에서 총급여액 등을 뺀 금액에 100분의 28을 곱한 금액

3. 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에 90분의 17을 곱한 금액
나	9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	170만원
다	1천200만원 이상 2천100만원 미만	2천100만원에서 총급여액 등을 뺀 금액에 90분의 17을 곱한 금액

4.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에 9분의 2를 곱한 금액
나	9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	200만원
다	1천200만원 이상 2천500만원 미만	2천500만원에서 총급여액 등을 뺀 금액에 13분의 2를 곱한 금액

제100조의6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신청절차”를 “신청안내, 신청절차”로 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장려금의 신청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0조의9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제100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등

제100조의10제2항 중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을”로 한다.

제100조의13 전단 중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을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 및 제100조의6제6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한다.

제100조의15제1항제2호 중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6호의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을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6호의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00조의19제2항 후단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료”를 “특수관계인으로”로 한다.

제104조의5제2항 중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과”를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으로 한다.

제104조의6을 삭제한다.

제104조의8제3항 전단 중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과”를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으로 한다.

제104조의14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00분의 50”을 각각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04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4호”를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104조의18제1항 전단 중 “학교”를 “대학교”로, “지급하는”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연구·인력개발비””를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학교”를 “대학교”로, “기부하는”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학교”를 “대학교”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내국인이 해당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재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현장훈련수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현장훈련수당등”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현장훈련수당등”으로 본다.

제104조의20제1항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21제2항 중 “특수관계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제104조의23의 제목 “(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을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국법인이 2011년 12월 31일이”를 “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내국법인등”이라 한다)이 2013년 12월 31일이”로, “회계처리기준(이하 이 조에서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이하 이 조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을 “회계처리기준(이하 이 조에서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013년 1월 1일”을 “2014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내국법인은 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을 “내국법인등은 국제회계기준을”로 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2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5(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일(「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를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5조제1항제2호 중 “공급”을 “공급(「군인복지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를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 “구입한”을 “구입 또는 수입한”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4호의2”를 “제4호의2, 제9호의2”로,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제10조”를 “제15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2 중 “「주택법」 제2조제12호”를 “「주택법」 제2조제14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버스

-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로,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를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제11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로 한다.

이 경우 제11호 및 제14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5호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9호 및 제1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3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6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제106조제2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에 따라 2013년에 개최되는 제10회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의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16. 포물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 따라 개최되는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6월 30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주행세”를 “자동차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로, “면제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106조의2제2항, 같은 조 제9항제1호,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제1호가목, 제2호가목, 제3호가목 및 같은 조 제16항 중 “주행세”를 각각 “자동차세”로 한다.

제10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11년 12월 31일”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의7제1항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2011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을 “통보(이하 이 항에서 “미지급통보”라 한다)하여야 하며, 미지급통보를 받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이하 이 항에서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한 경우(경감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지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일) × 1만분의 3

나. 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세액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경감세액 상당액

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1만분의 3

다. 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제106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8(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이하 이 항에서 “수출재화”라 한다)를 공급하고, 그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과세기간을 말한다)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에 따른 원산지확인서를 그 수출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발급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액공제 대상 원산지확인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수출재화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며, 공제세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부가가치세법」 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7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2012여수세계박람회 외국 참가자 및 국제기구가 박람회 전시시설의 제작·설치·해체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제6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다. 다만 제8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9조의 제목“(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제116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 중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에 제25호와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25.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26. 포물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제116조제2항 중 “제22호는”을 “제25호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며, 제22호는”으로, “적용한다”를 “적용하며, 제26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한다”로 한다.

제117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2호의3”을 “제2호의2·제2호의3”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2의2.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제11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2011년 12월 31일”을 각각 “201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을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으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을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으로 한다.

제118조제1항에 제16호와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6.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회 관련시설의 시공자가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대회 관련 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17. 포물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회 관련 시설의 시공자가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 따른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운영에 사용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회 관련 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3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2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2항제1호·제2호 및 제121조의4제4항”으로 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산업지원서비스업: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

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제121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주식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준비금·재평가적립금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외국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외국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등으로 한정한다)을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④ 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1항에 따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증자분사업”이라 한다)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자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으로 한다.

$$\text{감면대상 세액} \times \frac{\text{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이후 새로 취득·설치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text{증자분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

제121조의10제1항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11제1항 본문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장의6(제121조의2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보건의료 기술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감면대상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이후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장의7(제121조의2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가 2012년 6월 30일까지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아 이 법과 「법인세법」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3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농협금융지주회사”라 한다)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2012년 6월 30일까지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금액
2.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의2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해서 부과하는 명칭사용료 수입금액에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④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할 때 「농업협동조합법」 제68조에 따라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면 해당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된 금액으로 본다.

⑤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의2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명칭사용료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의2에 따라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⑦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⑧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5제1항에 따른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이하 이 항에서 “농협보험”이라 한다)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농협보험 설립 전에 체결한 공제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제외한다.

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를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소득세법」 제158조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확인방법과”를 “확인방법, 소득공제 관련 자료수집 절차와”로 한다.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4호의 금액을 뺀 금액(연간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되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제1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2. 제1항제4호의 금액(전통시장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 100분의 30
3.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2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가.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20
 - 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많은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2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30

제127조제4항 중 “제33조의2”를 “제33조의2, 제62조제4항”으로, “제121조의21제2항”을 “제121조의21제2항 및 제121조의22제2항”으로, “제104조의18제2항 및 제104조의22”를 “제104조의18제2항, 제104조의22 및 제104조의25”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3조의2”를 “제33조의2, 제62조제4항”으로, “제121조의21제2항”을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을”를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및 제104조의25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3조의2”를 “제33조의2, 제62조제4항”으로, “제121조의21제2항”을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으로 한다.

제128조제3항 중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을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으로, “제33조의2”를 “제33조의2, 제62조제4항”으로, “제121조의21제2항”을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기간”을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으로, “제33조의2”를 “제33조의2, 제62조제4항”으로, “제121조의21제2항”을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2호 중 “제61조제3항”을 “제61조제3항, 제6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해당 과세연도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뺀 금액만 해당한다”를 “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로, “제104조의18 및 제104조의22”를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및 제104조의25”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33조의2”를 “제33조의2, 제62조제4항”으로, “제102조”를 “제102조 및 제121조의22”로 한다.

제132조제2항제4호 중 “제85조의6 및 제102조”를 “제85조의6, 제102조 및 제121조의22”로 한다.

제136조제3항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4조제1항 본문 중 “제104조의22”를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로, “금액[제26조제1항 단서를 적용받아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제26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을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계산식 및 각 호를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제14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과 제26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중 큰 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1.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2.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1호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수 × 1천500만원
3.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제1호에 따른 졸업생 수 - 제2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 - 다음 각 목의 수 중 큰 수) × 1천만원

가.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나. 이월공제받는 금액의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다. 제26조제6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제14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7조(무액면주식의 가액 계산) 제87조의6제1항, 제88조의4제9항제3호·제10항제2호, 제91조의4제1항 및 제91조의6제1항을 적용할 때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배당기준일 현재(제88조의4제14항제3호의 경우에는 발행일 현재)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액면가액으로 본다.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5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4조제3항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4조 중 “기업”을 “기업 및 2010년 1월 1일 전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으로 한다.

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3조 중 “기업”을 “기업 및 2010년 1월 1일 전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으로 한다.

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4조 중 “기업”을 “기업 및 2010년 1월 1일 전에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으로 한다.

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6조 중 “기업”을 “기업 및 2010년 1월 1일 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제2항 및 제6항, 제10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부터 제100조의6까지, 제100조의9, 제100조의13, 제104조의23 및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6조제1항제5호 및 제121조의23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하며, 제100조의15제1항 및 제147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제10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 중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관한 부분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부분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 또는 지급받는 배당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관한 부분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부분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회수하거나 수익증권을 양도·환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발행·차입·매각하는 외화표시채권, 외화채무, 외화표시어음 또는 외화예금증서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및 제1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폐지하거나 유상감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종전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입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부터 제100조의6까지, 제100조의9, 제100조의13,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2,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 이후 적용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8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비용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3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5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례) 제10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환급신청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7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경감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8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2012여수세계박람회 외국 참가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증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4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증자하여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7조(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121조의2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 이후 최초로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1조의2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 이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21조의23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21조의2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제121조의23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문화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①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 중 2012년 1월 1일 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종전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제2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②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 중 2012년 1월 1일 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종전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른 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제2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는 “중간예납기간”으로 본다.

제32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발행·차입·매각한 외화표시채권, 외화채무, 외화표시어음 또는 외화예금증서에 대해서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제74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은 2012년 1월 25일까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 본다.

제34조(증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의 증자분에 대해서는 제 121조의4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과 연계된 투자를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를 신설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의 확대, 생계형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과 관련된 각종 조세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 말로 적용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 중 일부를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7조제1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안 제8조의3제1항)

중소기업의 녹색성장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을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

다. 서비스 개발 활동 등을 과세특례 대상 연구개발의 범위에 추가(안 제9조제2항, 제5항)

연구개발의 정의에 새로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을 위한 활동을 추가하되,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과세특례는 자체 연구개발로 한정

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등 신설(안 제13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제4항, 제5항 및 제8항)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직접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조합을 통하여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해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비과세하고, 출자할 수 있는 조합의 범위에 농식품투자조합을 추가함.

마.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 출자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율 및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안 제16조)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소득공제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30%에서 40%로 확대함.

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한 연장(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국외 첨단기술의 국내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사.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제도 보완(안 제21조제1항)

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인수하는 외화표시채권·어음·예금증서 등의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법인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로 전환함.

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안 제25조의2제1항)

저탄소·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안 제26조)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1퍼센트에서 최대 5퍼센트 또는 7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졸업생 고용분에 대한 공제한도를 확대함.

차.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신설(안 제30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하여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100퍼센트 감면함.

카.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 연장(안 제30조의3제1항 및 제3항)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는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

타.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 신설(안 제30조의4)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하여 청년 근로자 순증인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부담분 전액을, 청년 외의 근로자 순증인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의 50퍼센트를 세액공제함.

파. 현물출자 등을 통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에 대한 사후관리규정 마련(안 제32조제5항)

법인전환 후 5년 이내 사업폐지 또는 50퍼센트 이상 유상감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거주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함.

하.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적용시한 연장(안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법인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감면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안 제62조 신설)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하고, 이전 후 5년간 법인세를 감면함

- 너. 국제대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안 제74조제1항, 제106조제2항, 제116조제1항, 제118조제1항)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포물러윈 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함
- 더.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 연장(제85조의8 제1항)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적용시한 연장(안 제87조의2)
농어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비과세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머. 노인 등의 생계형저축 비과세 적용시한 연장(안 제88조의2제1항)
노인·장애인·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계형저축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버.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시한 연장(안 제89조제1항)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9퍼센트 저율 분리과세 등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 연장(안 제91조의6제1항)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개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5퍼센트 또는 14퍼센트 분리과세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어.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한 연장(제99조의4 제1항)
도시자금의 농어촌·고향지역 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저.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금 제도 개선(안 제100조의3제1항, 제100조의4제1항, 제100조의5제1항, 제100조의6제6항, 제100조의9제1항 및 제100조의13, 법률 제9921호 부칙 제45조)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시적으로 저소득이 발생한 고임금 상용근로자를 수급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총소득기준을 월별로 환산하여 적용하도록 하며,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적용대상 범위와 지급금액을 합리적으로 차등 조정하고, 수급요건 중 주택요건을 완화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자에 대하여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근로장려금 제도를 개선·보완함.
- 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의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안 제104조의18제4항 신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특성화고 등과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기업이 해당 학교의 재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에 대하여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수준의 세제지원을 신설함.

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안 제104조의25 신설)

석유제품을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의 100분의 10 한도에서 세액공제 함.

티.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 전기버스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106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친환경연료를 사용하는 전기버스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버스의 공급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피.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안 제109조제4항, 제5항, 제6항 신설)

저탄소·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200만원 한도까지 감면함.

히.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면제(안 제11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농식품투자조합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개선(안 제121조의4제2항 및 제4항)

외국인투자자가 이익처분에 의하여 배당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증자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의 근거가 되는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감면의 예에 따라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하고, 감면종료된 사업의 자산을 증자한 사업에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세액에 증자 등기일 이후 취득·설치한 사업용 고정자산이 증자분 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함.

노.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안 제121조의22 신설)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입주하는 보건의료기술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함.

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특례(안 제121조의23 신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조개편 시 발생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등을 면제함.

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 개편(안 제126조의2제2항)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30퍼센트로 확대하고 추가로 100만원까지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체크·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30퍼센트로 소득공제율을 확대함.

모. 연구개발특구 등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한도 적용 제외대상 보완(안 법률 제

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4조, 제63조, 제64조 및 제66조)

연구개발특구·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한도 적용 제외대상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에서 2010년 1월 1일 전에 연구개발특구 등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특구 등에 입주한 기업도 포함되도록 보완함.

<법제처 제공>